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취지해설 및 향후방향

이규식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서기관

I. 서론

1. 제정배경 및 경위

1996년 12월 30일 건설업법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1958년 3월 11일 개정되었던『건설업법』은 없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이 태어났다.

종전의 건설업법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는 법이었으나 토목·건축공사의 도급업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어, 1970년대 들어오면서 산업의 발전과 건설공사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각 부처에서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종별로 각기 다른 법률에 시공자격제도를 따로 규정하게 되어 건설산업의 관할 제도는 14개 법률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6개부처로 다원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새로 건설업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각 법률을 통합조정하는 기본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거나 국내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제도는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개선된 내용이 건설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는 잇달아 발생하였다.

'95. 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같은해 7월 15일 업계·학계·공무원·전문가등으로 건설 제도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동 기획단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을 심층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6. 2.13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때 마련된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건설기술의 개발과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고, 건설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맞는 국가계약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의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95년 건설제도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실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1) 설계·감리등 엔지니어링분야의 취약과 기술수준의 낙후



- (2) 감리 등 기술인력의 부족
 - (3) 시공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및 고용체계
 - (4) 우량·적격업체 선정과 부실·부적격업체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5) 국제적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건설제도와
발주자 우위의 계약관행
 - (6) 시설물안전관리상의 문제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 (1) 입찰·계약·설계·감리·하도급 등 그동안 추진한 부실방지대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 (2) 시공분야뿐만 아니라 사전조사·설계·감리 사후관리까지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 (3)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기술자·기능 공·자재 등 건설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과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 (4)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발주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보증회사 등 건설주체가 시장기능에 따라

상호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주요 추진대책은

- (1)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을 위해
 - ①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 전기·전기통신공사 등 분리발주의무규정을 완화하고 대규모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② 현실과 괴리된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실명제를 도입하여 십장등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전문건설업면허 중복취득제한을 완화하고 특수건설업면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③ 부실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공사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며, 부도발생이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자에 대한 건설업면허발

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 ④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련 각종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고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건설분쟁중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 ① 대학의 건설관련학과의 정원을 증원하여 건설기술자의 배출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자 관리를 위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술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설계의 전산화등으로 기술인력 수요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 ②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육성을 위해 건설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기능검정은 현장위주의 검정제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 ①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공사관리 등 전문직 공무원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위주의 도급한도액제도를 시 공능력공시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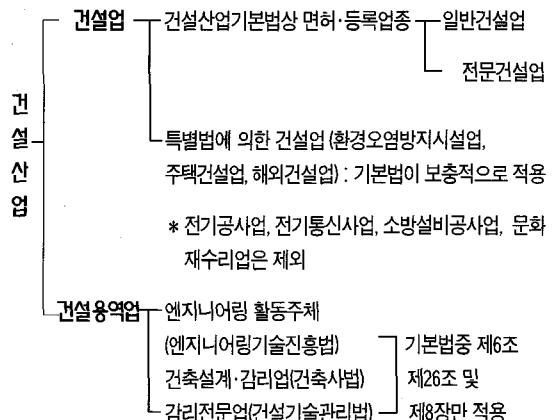
- ② PQ시나 공사발주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③ 충실한 설계와 효율적인 공사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비제도의 활성화, 장기계획비의 이월제도, 예산전용권의 위임 등 예산제도 도 개선하기로 했다.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 ①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확대, 건식공업 도입, 철구조물 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 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② 건설공사 품질보증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건

설시험소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에 대한 ISO인증기능을 확충하고, 시공업체가 사후 관리까지 일괄책임질 수 있는『시공 및 유지 관리일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 ③ 건설자재산업의 육성과 표준화·정보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에서 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의 내용은 지난해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정을 비롯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에 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정비 등을 통하여 대부분이 제도화되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함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보완작업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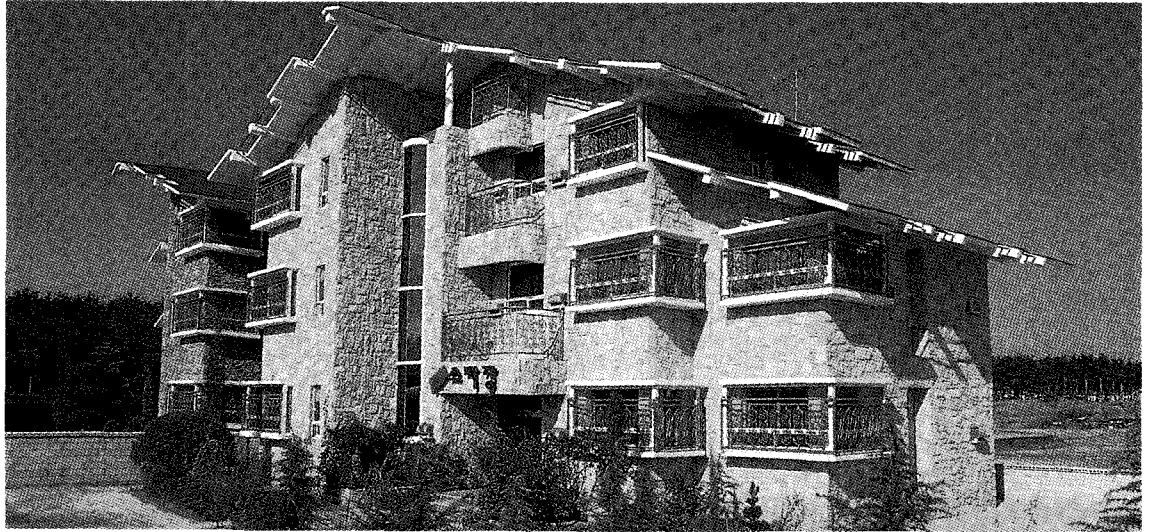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되고 건설공제조합법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을 통폐합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주요 개정내용

1. 총 칙

(1) 건설산업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

건설공사와 건설업의 정의를 한국표준산업분



류표에 의한 건설업의 개념과 일치되게 확대하여 정의하고(제2조제1호, 제2호),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규정한 건설업에 대하여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쟁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제4조).

그리고 다음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시공자격제도는 이 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포함되게 되며, 해당법률에 의하여 이미 등록한 자는 이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부칙 제4조, 제10조).

-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
-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
-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 ④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 ⑤ 건축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

다만,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수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하여 이를 시공하는 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했다(제2조제4호).

* 건설산업의 개념과 법적용체계

(2)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이념 등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 제시(제3조)
이 법은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정책의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3)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업체에게 건설업면허등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조).

(4)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가 노력해야 할 소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제7조).

- 정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주자: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건설업자: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 등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본 규정은 훈시적·선언적인 규정이지만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지침이 되는 규정이 될 것이다.

2. 건설업면허 및 등록

(1) 건설업의 구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각각 그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

할 업종구분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기로 했다(제8조).

(2) 건설업면허주기 폐지

건설업면허는 매년 1회 실시하던 것을 '97년 1월부터는 수시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제9조, 부칙 제1조단서).

(3) 등록제 도입

다른 법률에서 흡수되는 업종은 계속 등록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등록제를 두었으며, 등록업종에는 개신제도가 없는 것이 면허업종과 다른 점이다(제11조).

(4) 겸업제한의 완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겸업할 수 없던 것을 특수건설업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체간에도 같은 계열인 경우 2개업종에 한하여 겸업할 수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제12조).

그러나 일반건설업과 등록업종인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에 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건설업면허·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면허·등록의 결격사유에 부실시공으로 면허취소된 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를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고, 면허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임원도 결격자에 포함되도록 한 반면,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임원의 개임 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로 연장하였다(제13조).

(6) 변동사항 신고절차 간소화

2개 업종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업종별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에만 신고하면 신고받은 기관이 관계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제15조제2항).

(7)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전문건설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제1항 및 제3항).

(8) 건설업양도에 관한 규제완화

2개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자는 그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일부 업종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제1항).

3. 도급 및 하도급계약

(1) 도급한도액 폐지 및 시공능력공시제

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제23조).

① 시공능력공시대상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고,

② 시공능력평가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평가하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실적의 평가내용도 반영된다.

③ 시공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발주자나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공사의 특성과 시공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제25조).

따라서 건설공사에 관한 보증기관도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나 신용도를 도급한도액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신용평가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체제 확립

현행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및 연수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4조).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조사·설계·시공·감리·사후관리 등 전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공사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경험 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 시행과정에서 조그만 착오도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조 제6호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건설사업관리”라고 정의하고,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6조 제1항).

-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따로 자격제도는 두지 아니하는 대신,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행 법령상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을 하여야 위탁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 하였으며, 건축물의 설계·감리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 기술사등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 설치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설계 또

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26조제2항).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해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당해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제3항, 제4항).

(4) 건설공사하도급제도의 개선

- 도급받은 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도 일괄하도급 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협행 시행령 에서 정한 일괄하도급의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제29조제1항).

-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발주자에게 사후통보하던 것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 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9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하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락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함으로써 발주자가 하도급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였다(제29조제3항).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5호).

4. 시공 및 기술관리

(1) 건설공사 현장실명제 도입

건설공사시공에 실제 참여한 자의 권리를 보

호하고 부실공사의 경우는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공조직도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시공관리대장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자와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9조제1항, 제2항, 제7항)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등은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제39조제5항)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제93조제1항)

(2) 주요시설물 시공자의 시공능력 심사근거 신설

교량·터널·철도·항만·댐·고충건축물·하구둑·상하수도 등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허가처분을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공사의 규모나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제41조제2항).

5.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건설업자의 경영자율화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제46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은 계속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7조)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에만 하도급계약화를 이루도록 지도하던 것을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간에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받을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를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인이나 하도급시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대하도록 하였다(제48조)

-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실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지도(현행 제39조)와 경영자연수교육(현행 제39조의2)에 관한 규정은 건설업자의 경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삭제했다.

6. 건설협회의 설립 및 가입의 임의화

- 일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이외의 협회도 설립할 수 있으며,

-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제50조).

- 협회는 건설업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위법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제52조).

7. 공제조합설립근거법 일원화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설립·사업·지분의 양도 기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제조합법과 전문건설제조합법은 폐지하여 법령을 단순화하였으며,(제7장)
- 각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 상호협력과 정보교환등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등을 적립할 수 있게 하여 조합이 건설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제56조제2항, 제63조)

8.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

- 지방에서 발생하는 건설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제69조제1항)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과 도급계약당사자화 보증인간에 발생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9조제2항)

• 위원회는 조정중에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이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 소송제기시 증빙자료로 활용도록 하였으며(제72조)

• 조정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였다(제77조).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 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에는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공제제

도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하도록 했다(제87조).
- 건설근로자공제제도는 따로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운영하게 된다.

10. 시정명령등 행정제재처분사유 조정

• 시정명령사유

고의·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1조제8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에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처분 사유로 완화되었다(제82조제1항제5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동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 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동법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동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건의한때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11. 벌칙 조정

•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자는 종전과 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처벌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다(제95조).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 과징금을 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전속고발권과 이에 해당하는 벌칙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다음의 경우는 행정제재외에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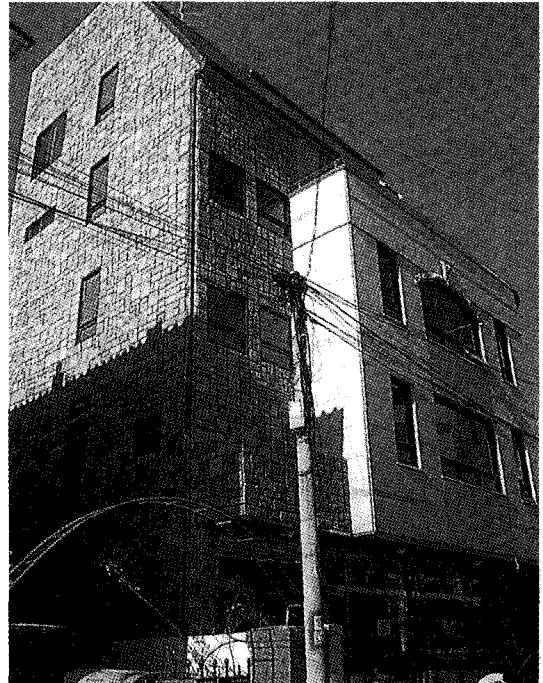
– 일괄하도급금지 및 재하도급금지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제96조제5호)

–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경우는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제96조제7호)

•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규정 신설
– 민간인으로써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수뢰한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였다(제90조).

12. 기타 규정

이 법률은 현행 건설업법을 개정한 것이므로 건설업의 면허 및 양도절차,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하도급에 관한 제도, 기술자의 현장배치 및 기술관리, 제재처분과 벌칙 등은 건설업법의 내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했다.



III. 향후 방향

이 법은 '97.7.1부터 시행하게 되며, 법시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게 되며 이는 6월30일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 1)건설업의 업종구분 및 면허·등록기준
- 2)시공능력 평가기준 및 공시방법
- 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대상
- 4)공체조합의 책임준비금 계상기준
- 5)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의 범위
- 6)시공관리대장작성 및 시공조직도 게시방법

